

2023년도 단체교섭 요구(안)

구분	안건	세부요구사항
임금 분야	① 임금인상 : 7.1% ↑ ② 일시금 지급 : 1천만원 ③ 급식통근보조비 인상 - 22,000원	○ 경제지표를 반영한 임금수준 확보 ○ 영업이익 1조 달성 배분, 23년 무분규사업장 ○ 물가인상 반영
복지 분야	④ 복지기금 951억 출연 ⑤ 업무용단말기 지급 ⑥ 복지포인트 2배 인상	○ 목적사업비 운영을 위한 비용 출연 ○ 2021년 9월 지급, 평균 교체 시기 도래 ○ KT조합원 자존심 회복, 사기진작
제도개선 분야	⑦ 임금피크제도 개선	○ 차별해소, 감액률 및 기간 축소, 노동시간 단축
고용안정 분야	⑧ 노동이사제 도입	○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통한 고용안정 확보

단체협약 개정요구(안)

개정 前	개정 後	비고
<p>제 17 조(통지사항)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대방에 통지할 수 있다.</p> <p>1. 회사의 통지사항 가. ~ 바 사. 이사회 개최 일시 및 회의결과</p>	<p>제 17 조(통지사항)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대방에 통지할 수 있다.</p> <p>1. 회사의 통지사항 가 ~ 바. 나. 이사회 개최 목적, 일시 및 회의결과</p>	내용 명확화
<p>제 45 조(평균임금) 조합원의 퇴직금계산 평균임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.</p> <p>1.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월 간에 그 조합원에게 지급된 임금 [기준연봉 (기준급, 역량급, 역할급, 직책급), 초과근무수당, 가산금 (초과가산금, 휴일가산금)] 을 3 등분한 금액</p> <p>2.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 년 분의 성과급, 연차휴가보상수당을 12 등분한 금액</p>	<p>제 45 조(평균임금) 조합원의 퇴직금계산 평균임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.</p> <p>1.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월 간에 그 조합원에게 지급된 임금[기준연봉 (기본급, 역할급, 직책급, 급식통근보조비), 초과근무수당, 가산금(초과가산금, 휴일가산금)]을 3 등분한 금액</p> <p>2.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 년 분의 성과급, 연차휴가보상수당을 12 등분한 금액</p>	급통비 포함
<p>제 55 조(근무시간) ①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9시에 시업하여 18시에 종업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업무의 특수성 및 근무형태에 따라 노사협의로 시·종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 1 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본인의 시·종업시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 주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. 다만, 출근일의 경우 최소 4시간은 근무해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이하 생략)</p>	<p>제 55 조(근무시간) ①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9시에 시업하여 18시에 종업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업무의 특수성 및 근무형태에 따라 노사협의로 시·종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 1 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본인의 시·종업시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 16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. 다만, 출근일의 경우 최소 4시간은 근무해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이하 생략)</p>	노사합의 사항 반영 (총량근무 제)
<p>제 62 조(휴가)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1 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.</p> <p>② 제 1 항 각호의 휴가기간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연차휴가 :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는 연간 15 일의 휴가를</p>	<p>제 62 조(휴가)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1 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.</p> <p>② 제 1 항 각호의 휴가기간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연차휴가 :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는 연간 15 일의 휴가를</p>	

<p>부여한다. 다만,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할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.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. 회사는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,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1의2(연차휴가의 사용촉진)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고 마 사용휴가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.</p> <p>1의3(휴직자 연차휴가 이월) 하반기 복직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복직년도 발생연차의 50%까지 다음해 상반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1의4(공상자 연차휴가 이월) 12월 복귀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복직년도 발생연차의 50%까지 다음해 상반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(중략)</p> <p>5. 청원휴가</p> <p>가. 결혼</p> <p>(1) 본인 : 7일</p> <p>(2)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: 1일</p> <p>[선박으로만 이동 가능한 도서지역은 2일]</p>	<p>부여한다. 다만,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할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.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. 회사는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,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1의3(휴직자 연차휴가 이월) 하반기 복직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복직년도 발생연차의 50%까지 다음해 상반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1의4(공상자 연차휴가 이월) 12월 복귀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복직년도 발생연차의 50%까지 다음해 상반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(중략)</p> <p>5. 청원휴가</p> <p>가. 결혼</p> <p>(1) 본인 : 7일(휴일/휴무일 제외)</p> <p>(2)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: 1일</p> <p>[선박으로만 이동 가능한 도서지역은 2일]</p>	<p>연차촉진 폐지</p> <p>현행화</p>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p>(3) 자녀 : 3 일(자녀결혼일과 그날 직전후 1 일) 나. 회갑 또는 칠순 (1)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: 1 일 다. 사망 :</p>	<p>(3) 자녀 : 3 일(자녀결혼일과 그날 직전후 1 일) 나. <u>회갑, 칠순, 팔순, 구순</u> (1)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: 1 일 다. 사망 : 6 일(<u>휴일/휴무일 제외</u>)</p>	<p>개선 현행화</p>
<p>제 112 조(정년 및 재고용) ①직원의 정년은 만 60 세로 하며, 정년 퇴직시점은 매월 단위로 산정한다.</p>	<p>제 112 조(정년 및 재고용) ①직원의 정년은 <u>만 65 세로</u> 하며, 정년 퇴직시점은 매월 단위로 산정한다.</p>	<p>정년연장</p>